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5,227,645	22,656,829
일반회계	660,540,000	19,816,200
특별회계	94,687,645	2,840,629
공기업특별회계	10,135,225	304,057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0,135,225	304,057
기타특별회계	84,552,420	2,536,57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26,466	30,794
주차장특별회계	773,226	23,1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65,429	61,9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048,205	691,44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09,767	15,293
치수사업특별회계	388,475	11,65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10,406	15,312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53,226,000	1,596,780
도시개발특별회계	3,004,446	90,1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004,429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복적예비비는 3,060,65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